

# 광고영상제작 업무협력 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광고영상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, 상호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광고영상제작사들에게 실제적 광고영상의 기획 및 제작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(범위 및 의무)

- 업무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이 광고영상 산업의 발전과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동 노력을 모색한다.
- 이를 위해 효과적인 업무협력과 홍보에 대한 방안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
**제3조(협약사항)**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력한다.

- 빛마루 방송지원센터를 활용한 광고영상제작 시 대관료 및 임대료 할인 지원
- 광고영상 제작기술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
- 광고영상제작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직·간접적인 지원 노력
-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간 시너지가 기대되는 기타 비즈니스 모델의 모색과 협력

**제4조(상호협력)** 양 기관은 광고영상제작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 한다.

-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는 회원사가 광고영상 제작을 위한 외부시설, 장비 이용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고영상 제작사가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이용 시 시설이용 편익을 제공하며, 추가 시설 장비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.

**제5조(비밀준수)** 양 기관은 상호 협력 또는 교류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6조(협약기간)** 본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양 기관의 별도의 논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.

**제7조(권리·의무 승계)** 본 협약 체결 후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되며,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06월 10일

KCC  
한국콘텐츠진흥원

한국콘텐츠진흥원  
빛마루 방송지원센터  
원장 송성작

YKU

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 
협회장 김찬

김찬